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심현정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심현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 감면 대상에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심현정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 감면 대상에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추가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수도법」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출산 가구는 영유아의 위생 관리를 위해 용수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요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541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5일

발 의 자 :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 감면대상에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0. ~ 2026. 2. 23.(14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u>11.</u> (생략)</p> <p>② (생략)</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u></p> <p><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생후 24개월 이하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연간 출생아 수는 연간 95~100명으로 출생아가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으로 태어날 경우 “다자녀 감면” 으로 기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출생아가 첫째아이일 경우 조례 개정 시 시행 규칙으로 가구당 5톤 감면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 때 가구당 월 약 6,600원의 예산지원이 발생, 연간 500만원 미만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연락처	(033) 330 - 2363